

인천지방법원 2022. 5. 26 선고 2021가단260052 판결 [사해행위 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, 김정원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승헌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진상

변 론 종 결 2022. 5. 12.

판 결 선 고 2022. 5. 26.

주 문

1. 별지 목록에 나오는 아파트 중 2/7지분에 관하여, ① C과 피고 등이 2017. 9. 28.경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함과 아울러, ②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8. 3. 초순경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, 2018. 6. 20. ‘C은 원고에게 29,986,403원과 그중 26,252,277원에 대하여 2017. 11. 2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%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승소판결(☞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385229 판결)을 받았고, 그 판결은 2018. 7. 초순경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나. 원래 별지 목록에 나오는 아파트(이하 편의상 ‘이 사건 아파트’라고 한다)는 피고의 남편인 D의 소유재산이었는데, D이 2017. 8. 중순경 사망한 후 D의 처 또는 자녀로서 공동상속인들인 피고와 C, E는 2017. 9. 하순경 상속재산 분할협의(이하 편의상 ‘이 사건 약정’이라고 한다)를 한 다음, 2017. 9. 28.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2.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은 C의 채권자인 원고 등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(설령 ‘이 사건 약정이 실질적으로 상속 포기’에 해당’하더라도, 이와 다르게 평가할 수는 없음), 그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정당하다.

나.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,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(☞ ‘제척기간’)이 지난 후에 뒤늦게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다툰다.

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제소일로부터 1년 전에 이미 ‘피고와 C 등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’는 사실을 단순히 아는 정도’를 넘어, ‘이 사건 약정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’는 사실까지도 알았다’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중 2/7지분에 관하여, ① C과 피고 등이 맺은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함과 아울러,
②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
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, 그 의무의 이행 등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.

판사 박관근

별지